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보운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472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윤 · 서미화의의원 등 10인

2. 제안일자 : 2024년 12월 13일

3. 회부일자 : 2024년 12월 16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 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조정 및 심사 · 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 · 단체의 장 외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 중의 하나인 여성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의 인권향상과 관련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또한, 장애인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관련한 각종 조약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종합

적·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아동·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제개발협력에 적용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함에 있어 현행법의 기본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에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을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u> ④ ~ ⑥ (생략)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여성·아동·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등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u> -----.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u>9. (생략)</u> <u>③ ~ ⑧ (생략)</u>	<u>9.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을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u> <u>10. (현행 제9호와 같음)</u> <u>③ ~ ⑧ (현행과 같음)</u>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에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포함(안 제7조제3항)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아동·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인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이 보다 잘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현행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등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¹⁾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16명의 당연직위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원²⁾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³⁾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정안과 같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아동·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할 경우,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의 조정·심사·의결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인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이 보다 잘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면 민간위원은 최대 13명까지 위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개발이나 국제관계 등 타 분야의 전문가 위촉에 유연성이 저하되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여성·아동·장애인 및 청소년의 ‘인권 향상’인데, ‘여성·아동·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여성·아동·장애인 및 청소년 인권’ 분야에도 전문성을 지닌다고 반드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체계·자구적인 측면에서 개정안은 여성·아동·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예시로 들고 있는데, 여성·아동·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

2)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3) 2025. 2. 기준 위촉직 위원은 12명임. [참고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 약력]

가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취약계층의 인권향상뿐 아니라 빈곤 감소, 성평등,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도 이러한 기본정신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를 포괄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체결·공포된 조약을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추가(안 제11조제2항 제9호 신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최상위의 국가 종합전략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지향하는 비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함.⁴⁾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을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국제개발협력정책과의 유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함.

다만, 현행법 상 규정된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의 주요 사항과 개정

4) 2021년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음.

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격이 다소 상이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3.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4.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5. 지역별·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6.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7.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8.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단체 등의 역량 강화 및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기본방향
9.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교부는 ‘체결·공포된 조약을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개발 필요성, 주권적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의 조약 체결 현황뿐만 아니라 각국의 다양한 국내적 상황을 감안한 유연한 접근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264

[참고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 약력

성명	사진	학력	주요 경력
오준		-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 美 스탠퍼드대 국제정책학 석사	- UN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 OECD DAC 개혁패널의원 - 現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최재욱		- 고려대 의대 - 서울대 보건정책관리학 석사 - 고려대 의학박사	- 국제보건의료학회 회장 - 現 외교부 글로벌보건안보대사 - 現 고려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장 - 現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원용걸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 美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 現 한국국제경제학회 부회장 - 現 서울시립대 총장
강민아		- 이화여대 경영학과 - 美 하버드대 대학원 정책학과 - 美 하버드대 의료정책학박사	- 감사원 감사위원 -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 現 G20 자문기구 W20 한국 대표 - 現 이화여대 사회과학대 행정학 교수
김성규		- 서울대 사회과학대 석사 - 獨 베를린 자유대 산업사회학 박사	- KOICA 상임연구원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 現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센터장
박정숙		- 서울여대 경영학 -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 美 컬럼비아대 국제대학원 - 日 게이오대 미디어정책대학원	- EDCF 자문위원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객원교수 -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한국 대표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 現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현주		-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학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펜실베이니아대 정치학 박사	- 인디애나대(블루밍턴) 조교수 - 現 외교부 분담금실무위원회 민간위원 - 現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이사 - 現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현식		- 한국외대 영어학 학사 - 고려대 행정학 석사 - 美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정치학 박사	- KOICA 전략기획 상임이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現 패밀리코이카 행복나눔 이사장 - 現 국제개발건설협회 부회장
이화용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학사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석사 - 美 케임브리지대 정치학 박사	-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 現 한국국제협력단 자문위원 - 現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성명	사진	학력	주요 경력
이런주		• 서울대 외교학 학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 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現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소장
윤주희		• 경북대 사회복지학 학사 • 경북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위원 • 現 KOICA 민간정례협의회 의원 • 現 하트-하트재단 사무총장
최윤정		• 가톨릭대 약학대학 • 現 서울대 정치학 석사 재학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세계약사연맹 청년약사그룹 • 커리어개발툴킷 제작팀원 • 現 WHO 제보건의료인력네트워크 청년허브 연구팀원

자료: 외교부